

## 행 정 기 관 명

수신자 ( ) 귀하( )

제 목 종합검사명령

귀하의 자동차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나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계속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 및 「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아래 ⑨란의 명령 이행기간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(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)에서 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소 유 자	① 성명(상호)	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주 소	(전화번호: )		
자 동 차	④ 등 록 번 호		⑤ 차 대 번 호	
	⑥ 차 명		⑦ 차 종	
	⑧ 종합검사기간		부터	까지
⑨ 명 령 이 행 기 간		부터	까지	

※ 유의사항

-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 이행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이 명령서를 받고도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.
-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종합검사를 받았거나 진출·이전·말소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·도에 전화,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직인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     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     결재권자(직위/직급) 서명  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  
시행 처리과명-일련번호(시행일자)     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)  
우편번호      주소      /홈페이지 주소  
전화( )      팩스( )      /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/공개구분  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